공고 제 12 호

직 권 조 치 결 과 공 고 문

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.

2022년 03월 25일

자양제1동장 인

세대주성명	성명 생년월일	주소	직권조치사항 직권조치일자
최 *진	최 *진 1956-05-05	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11길 (자양동)	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2022-02-28